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의 화상 환자 보험금 지급사례

윤장근 / 삼성화재해상보험 차장

1.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무과실 책임주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은 책임이 있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상기의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하 '신배책'이라 한다)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신체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2.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가. 보상하는 손해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상한다.

※ 특수건물이란 화재보험법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로서 다수인이 출입, 근무 또는 거주하여 화재 시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인 건물
- 국유건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학원,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병원, 학교, 호텔, 공연장, 시장, 공장, 방송국 등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불특정타인 및 종업원 등)을 뜻함.

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피해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
- (2) 전쟁, 폭동 및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손해
- (3) 지진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4) 원자력 위험
- (5)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

다. 보험금액 (2000년 12월 30일자 개정)

- (1) 사망의 경우에는 6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 실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 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남자평균 임금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를 더한 금액으로 함.

- (2) 부상의 경우에는 「화재보험법 시행령-별표 1」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표 1> : 상해구분 및 보험금액)

단, 지급보험금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상해급별 (1급~14급)에 따라 1,500만원~20만원

※ 실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신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상해를 치료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부상이 원인이 되어 휴유장애가 생긴때는 「화재보험법 시행령-별표 1」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 장애등급별 (1급~14급)에 따라 6,000만원~240만원

- (4) 부상자가 치료중 사망한 경우에는 (1)항과 (2)항의 보험금을 함께 지급한다.

- (5)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2)항과 (3)항의 금액을 함께 지급한다.

- (6) (3)항의 금액을 지급한 후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1)항의 금액에서 (3)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한 보험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3. 신체손해배상 사례

[사례 1] 수리보수 작업중 화재로 인한 사망/부상 사고

가. 사고개요

- (1) 사고일시 : 2001년 3월 27일
- (2) 사고장소 : ○○ 울산공장

(3) 사고원인 : 화재

(4) 사고경위 : 용역업체인 ○○기술(주) 소속 직원 4명이 계약자의 생산라인 정기 보수작업을 진행하던 중 취급부주의에 의해 세정작업에 사용되는 가연성 가스가 누설되었고, 누설된 가스가 작업 중 떨어뜨린 공구의 스파크 불꽃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함. 이로 인하여 건물 일부가 소손되고 작업자 4명이 화상을 입었으며, 이 중 1명은 사망하고 3명은 화상피해를 입음.

나. 보험계약사항

(1) 보험종목 : 패키지보험(재물손해담보)

(2) 담보내용 : 화재, 폭발 등 면책으로 하지 않는 모든 위험에 의한 손해

(3) 특약사항 :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특약, 종업원배상책임부담보 추가특별약관

다. 담보여부의 검토

(1) 연면적 3,000㎡이상의 공장으로 특수건물에 해당되며,

(2) 담보하는 손해인 화재에 의해 타인(용역업체 직원)이 신체손해를 입었으므로 건물 소유주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보상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상 처리함.

라. 피해현황 및 지급보험금 산정

(1) 피해자 이○○(남)

- 병명 : 전신성 3도 화상 후 사망

- 부상부위 : 전신

- 치료기간 : 병원이동 후 사망

- 상해급수 : 1급 11항 (보상한도 1천만원)

- 보험금 : 30,731,980원 · 치료비 : 731,980원 · 사망보험금 : 30,000,000원

- 산정근거 : 손해배상금(일실수익액, 장례비)이 사고시점의 신배책 사망보험금(3,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사망보험금 전액과 사망 직전까지의 치료비를 전액 보상 처리함.

(2) 피해자 박○○(남)

- 병명 : 화상(2~3도, 20~25%)

- 부상부위 : 안면부, 양측 상지와 하지

- 치료기간 : 2000년 3월 27일 ~ 2001년 4월 25일

- 상해급수 : 5급 12항 (보상한도 5백만원)

- 후유장해 : 14급 4항 (보상한도 120만원)

- 보험금 : 4,157,426원 · 치료비 : 2,957,426원 · 후유장해보험금 : 1,200,000원

- 산정근거 : 상해급수 내 치료비 전액과 14급 해당의 후유장해보험금 전액을 보상

처리함.

(3) 피해자 신○○(남)

- 병명 : 화상(2도, 7%)
- 부상부위 : 안면부, 우측 상·하지
- 치료기간 : 2000년 3월 27일~2001년 2월 28일
- 상해급수 : 7급 8항 (보상한도 250만원)
- 후유장해 : 14급 4항 (보상한도 120만원)
- 보험금 : 3,700,000원 · 치료비 : 2,500,000원 · 후유장해보험금 : 1,200,000원
- 산정근거 : 실발생치료비는 330만원이나 상해급수 한도액인 250만원만 보상 처리되며, 14급 해당의 후유장해보험금 전액이 보상 처리됨.

(4) 피해자 원 ○ (남)

- 병명 : 화상(2도)
- 부상부위 : 우측 둔부, 상박부, 안면부, 하퇴부, 경부
- 치료기간 : 2000년 3월 27일~2000년 6월 25일
- 상해급수 : 7급 8항 (보상한도 250만원)
- 후유장해 : 없음
- 보험금 : 1,947,086원 (치료비)
- 산정근거 : 치료비는 상해급수 7급의 보상한도 250만원 이하이므로 전액 보상처리함.

[사례 2] 원인미상의 화재에 의한 부상사고

가. 사고개요

- (1) 사고일시 : 2000년 8월 24일
- (2) 사고장소 : 전남 여수
- (3) 사고원인 : 원인미상의 폭발/화재
- (4) 사고내용 : 공장 내에서 원인미상의 폭발 및 이로인한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내부에서 작업중이던 직원 및 용역업체 인부 등 19명의 인명피해 발생. (5명사망, 14명 부상)

나. 계약사항

- (1) 보험종목 : 패키지보험
- (2) 담보내용 : 화재, 폭발 등 면책으로 하지 않는 모든 위험에 의한 손해
- (3) 특약사항 :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종업원배상책임부담보 추가특별약관

다. 담보검토

- (1) 특수건물에서 발생한 폭발 및 화재사고로 신배책에 의한 보상은 화재로 인한 타인의 사망과 부상손해를 보상함.
- (2) 본 사고는 폭발 및 화재가 동시 발생하였고, 화재에 의한 추가 폭발 등이 있었으나 피해원인이 화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신배책에 의해 보상 처리함.
- (3) 신배책에서 종업원 및 용역업체 직원은 타인에 해당되나, 상기 업체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종업원배상책임부담보 추가특별약관에 의해 종업원의 사망 및 신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종업원 손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됨)
- (4) 산재보험 비대상자인 용역업체 직원 1명의 신체손해에 대한 치료비에 대하여 보상처리함.

라. 피해현황 및 지급보험금

(1) 산재보험 가입 직원의 사망 및 부상(화상 등) 피해

- 산재보험에 의해 보상 처리되며, 신배책에서는 종업원배상책임부담보 추가 특별약관에 의해 보상 처리되지 않음.

(2) 용역업체 직원 1명

- 병명 : 아르킬레스건 파열, 화상
- 부상부위 : 발목, 안면부 경미 화상
- 치료기간 : 약 5개월
- 상해급수 : 5급 11항 (보상한도 5백만원)
- 보험금 : 4,289,400원
- 산정근거 : 상해급수 5급 보상한도액 내의 치료비 전액을 보상 처리함.

4. 맺음말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주로 주택이나 공장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이의 대부분은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산재보험에 가입에 따른 종업원배상책임부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약에 의한 보상처리 사례는 1991년 이후 50여 건에 불과할 정도로 흔하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약에 의한 보상사례(특히 화상사고)를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하기란 매우 어렵다. 단지, 상기의 사고사례를 통해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서 특약에 의한 화상사고 보상 처리시 주요 검토사항 및 보험금 산정방식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며, 주요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사고원인 : 화재. 단, 주택화재의 경우 폭발 및 과열 포함
(화재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고의 중과실 등 면책사유 해당여부 확인)

나. 피해발생 : 타인의 신체손해 (재물손해 및 피보험자 자신의 손해는 면책)

다. 지급보험금 산정

- (1) 사망의 경우 : 일실수익액 + 장례비 (최저 1천5백만원 ~ 6천만원)
- (2) 부상의 경우 : 치료비 (등급별 20만원 ~ 1,500만원)
- (3) 후유장해의 경우 : 장해등급별 기준액 (240만원 ~ 6,000만원)
- (4) 치료중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 치료비 + 사망 또는 후유장해금액